

■본 번역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의 계약 및 보상은 원문약관에 따릅니다.

종합배상책임보험(I) 보통약관

이 보험의 담보범위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보험증권을 잘 읽어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담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하는 「귀하」라 함은 신고란 기재의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라 함은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란 제2장 「피보험자」에서 정해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 」 내에 인용되는 용어는 제5장 「용어의 정의」에 따릅니다.

제 1 장 담 보 범 위

담보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급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 기간중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사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 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담보A나 담보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C에서의 의료비를 이보험의 보상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 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합니다.

다.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 「재물손해」는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그러

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 「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2)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1)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 (2) 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 (3)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라.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금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마.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2) 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2)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바.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가)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 (나)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 (다)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 (라)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내나 그 시설로부터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사.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한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가) 길이가 25feet미만이고

(나)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귀하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

(4)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5) 「이동장비」에 관한 제5장 용어의 정의 8. 바(2) 또는 바(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아.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1)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장비」의 운송

(2) 「이동장비」를 시합,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자.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전쟁에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차. 아래의 「재물손해」

(1)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6) 「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시설이 「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 (4), (5) 및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카.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귀하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귀하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파.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 (1)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하. 다음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 (1) 「귀하의 생산물」
- (2) 「귀하의 작업」
- (3) 「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다」에서 「하」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3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담보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 다만,

-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담보 「가」 나 담보 「나」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 「다」에서의 의료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나.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 발생한 인격침해
- (2) 귀하의 사업수행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광고침해
-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아래의 사유에 의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 (2) 보험기간 개시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나. 아래의 사유로 인한 「광고침해」

-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유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제품,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잘못된 경우
- (4) 광고, 라디오방송, 출판물 또는 TV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생한 경우

당보C. 의료비 지급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1) 보험기간중에 「당보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 사고일자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3) 피해자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2)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장소

(3) 귀하의 사업활동에 기인된 사고

나.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1)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비용

(2)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 나.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대한 「신체장해」
- 다.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을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은 「신체상해」
- 라.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는 「신체상해」
- 마. 운동경기에 참가중에 입은 「신체상해」
- 바.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상해」
- 사. 담보A에서 보상하지 않는 「신체상해」
- 아. 선전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 전쟁이라 함은 내란, 폭동, 발란 또는 혁명을 포함합니다.

추가지급조항 - 담보A 및 담보 B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배율을 보상합니다.

1.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신체장해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 보증보험료를 25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석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입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입해제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100한도내의 소득상실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판결의 이자. 다만, 회사가 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판결확정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외,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보상되는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합니다.

제 2 장 피 보 험 자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신고란에 개인으로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단독사업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 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활동범위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원인 자 및 그 배우자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 집행임원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는 피보험자가 되며 주주는 또한 그 책임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됩니다.

2.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가. 업무집행임원이외의 근로자.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 (1) 업무수행중에 귀하 또는 동료근로자에게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 (2) 전문직으로서 건강관리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 (3) 근로자 또는 구성원(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경우)이 소유, 점유, 임대하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나. 귀하의 부동산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또는 단체

다.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귀하의 재산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범위내에 재산관리인

라.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직무범위내에서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이 보험증권하에서 갖는 귀하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이동장비」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 (1)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운전중인 자
- (2) 위 (1)의 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이동장비 조작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내로 하고, 이때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없었을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가. 이동장비를 운행중인 사람의 동료에 대한 「신체장해」

나. 귀하나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소유, 임차, 점유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신규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경영권 또는 과반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가.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90일까지만 담보되며, 보험기간이 먼저 끝날 때는 그때를 보험이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A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에 대하여 담보B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고란에 기명피보험자로서 기재되어있지 않은 현재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보 상 한 도 액

1. 회사는

가. 피보험자의 수

나.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신고란기재의 금액으로 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총보상한도액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가. 담보 「C」에 따른 의료비 및

나. 담보 「A」 및 「B」에 따른 손해배상금. 그러나 「생산물/완성작업」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손해 배상금은 제외됩니다.

3.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담보 「A」에 있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4. 위2 에 있어서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 「B」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5. 위 2나 3의 어느것을 적용하든 1사고당 한도액은 한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가. 담보 「A」에 의한 손해배상금

나. 담보 「B」에 의한 의료비

6. 위 5의 화재손해보상한도액은 하나의 화재사고로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 「A」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한도액입니다.

7. 위 5의 의료비한도액은 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담보 「C」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이 보험증권의 한도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연도별 및 12개월미만의 추가 기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개월미만의 잔여기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은 원보험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일 반 조 항

1. 파산

회사는 피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피보험자의 의무

가.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2)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이 제기되면 귀하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다. 귀하 또는 사고와 관계되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할 것

(2) 회사가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회사에 협조할 것

(4)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장해 또는 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

라.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떤 비용도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소송

이 보험계약하에서는 누구든지 아래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가.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나.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증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실심리를 거친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나 이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회사,

피보험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나 그 법률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화해서 및 면책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보험과의 관계

회사가 이 보험증권 담보 A 또는 담보 B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가. 제1순위의 보험

아래의 「나」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우선 적용됩니다. 이 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다른 보험이 이 보험에 대한 우선적용증권이 아닐 경우 회사는 다른 보험

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 「다」 방법에 따라 부담합니다.

나. 초과액보험

다른 보험이 우선순위의 보험이거나, 초과액 보험이거나, 후순위 보험 및 기타 다른 방식의 보험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 보험은 초과액만 담보합니다.

- (1) 다른보험이 「귀하의 작업」에 대한 화재보험, 확장담보보험, 건설공사보험, 시설공사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일 때
- (2) 다른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일 때
- (3) 제1장 담보 「A」의 면책조항 「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자동차」 또는 선박의 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초과액담보일 때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방어의무를 지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담보[A] 및 담보[B]의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방어를 하지 않을 때

리회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의 초과액만을 담보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회사는 이를 부담 지급합니다.

- (1) 이 보험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계금액
- (2) 다른 모든 보험의 면책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초과액보험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과 특별히 이 보험의 신고란기재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른 보험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부담합니다.

다. 부담방법

다른 모든 보험이 균등액방식에 의한 부담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또는 손해액이 전액 보상될 때까지 어느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보험이 균등액방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보상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에 대한 각사의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5. 보험료정산

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나. 이 증권에 선납보험료로서 기재된 보험료는 예치보험료에 불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후 해당기간에 대한 받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정산보험료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납입하여야 하며 선납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보험료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진술사항

귀하는 이 보험증권의 다음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가. 신고란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 나. 그 기재사항은 귀하가 회사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 다. 회사는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

7. 피보험자의 분리

보상한도액 및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상 특별히 양도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를 단독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며,
- 나.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이 제기된 각 피보험자별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든가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해 지

가.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지서를 회사에 발송함으로써 해지됩니다.

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해지됩니다.
- (2) 다음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③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때
 - ④ 피보험자가 약관12에서 정한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다. 회사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의 최근의 주소로 통지합니다.

라. 해지통지서에는 해지효력발생일을 명기하며, 보험기간은 해지 효력발생일에 끝납니다.

마.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료를 지급 합니다. 회사가 해지한 때는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가 해지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지급 합니다.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도 해지효력은 유효합니다.

바. 통지서를 우송한 경우 우송증명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10. 변경

이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귀하와 회사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동의를 얻어 이 보험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보험조건은 회사가 발행하는 배서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제외되며 그 배서는 이 보험증권의 일부가 됩니다.

11.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라도 이 보험증권과 관련되는 귀하의 장부 및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12. 조사(손해사정)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 가.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 나. 회사가 발견한 상황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
- 다. 변경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보험가입 적합성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안전도를 조사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 상황이

- (1)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 (2)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산정기관, 자문기관, 요율 제공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13. 보 험 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 가. 회사에 대하여 모든 보험료납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나.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1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귀하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 증권하에 갖는 권리 및 의무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결정되기까지는 귀하의 임시대리인이 그 재산관리의 범위내에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 5 장 용 어 의 정 의

1.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 가.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이나 서

비스에 대한 중상

- 나.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 다. 광고기획 또는 사업방식의 유용
- 라.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 「자동차」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장비는 제외됩니다.

3. 「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 「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 나.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 (1) 장해 또는 손해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 (가) 위 「가」의 지역내에서 귀하가 제조, 판매한 제품
 - (나) 위 「가」지역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의 활동. 다만 사업활동의 목적으로 단기 간 거주지를 이탈했을 때에 한합니다.
 - (2)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가」지역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5. 「손상재물」이란 아래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 가.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관련되었을 때나
- 나. (1) 귀하의 생산물이나 귀하작업을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작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6. 「담보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 가. 시설의 임대차계약
- 나. 철로부설사용계약
- 다.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 또는 사용권계약
- 라. 기타의 지역권. 그러나 철도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업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 마.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 바. 승강기 보수계약
- 사.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기전에 타인이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귀하가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

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에서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서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 나. 피보험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타 기술 용역제공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 다.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7. 「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 가.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후에
- 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 다.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 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 「화물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장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8. 「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을 말합니다.

- 가. Bulldozer, 농기계, fork-lift 및 공도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 나.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 다.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 라.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천공기
 - (2) 그레이더,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 마. 위의 가.나.다.라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지 기동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 (1)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 장비포함)
 -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 바. 위의 가.나.다.라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하물의 수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지 않고 「자동차」로 봅니다.
 - (1)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 (가) 제 설
 - (나)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다) 도로청소

-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truck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기계 포함)

9.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10. 「인격침해」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신체상해」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가.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나.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다.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치

라.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마.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11. 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밖에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제외합니다.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나. 아래 시기중 먼저 도래한 때를 「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음에 기인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 「적재 및 하역」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합니다.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3) 이 보험증권이나 회사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완성작업

12. 「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3. 「소송」이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합니다.

14. 「귀하의 생산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1)귀 하

(2)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3)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나. 위 「가」의 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내구성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위 「가」 또는 「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5. 「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나. 위 「가」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위 「가」 또는 「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